

「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 사 경 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9. 12(수) 평창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12. 9. 24(월)

다. 상정일자 : 2012. 9. 24(월) 제18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 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재무과장)

○ 국가유공자 등에 지원되었던 제증명 수수료 감면 혜택을

5·18민주화유공자 등 4개 부분에 대하여 확대하고, 건물번호판  
부여(변경) 신청 등 새로운 수수료에 대한 요율을 정하고자 함.

○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

(제7조 제1항 제1호 바목 내지 자목 규정)

- 5·18민주화 유공자, 특수임무수행자, 등록장애인, 의사상자

○ 수수료 신설(제3조 제1항 [별표1] 규정)

- 민원봉사과 소관

·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⇒ 건당 7,000원

- 환경과 소관

· 소음·진동 배출시설 설치(허가·신고) 신청 ⇒ 건당 7,000원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 대한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면서 건물번호판 등 새로운 수수료에 대한 요율을 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임.
- 주요 내용을 보면
  - 수수료 감면 대상에 5·18민주화 유공자, 특수임무 수행자, 등록장애인, 의사상자 등을 추가하고
  - 건물번호판 재교부, 소음·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청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신설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, 소음·진동관리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면서 수수료 감면혜택 대상자를 확대하고,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